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 10. 20.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10월 7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5년 10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19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15.10.1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박춘은)

가. 제안이유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정확한 1회용품 사용억제 안내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여 깨끗한 1회용품 사용억제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기한 변경 (안 제5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이의제기 기한은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의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규정을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변경하여 상위법과 일치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칙에서 상위법으로 준용토록 개정(안 제18조)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개인정보 포함 별지 서식 개정
 -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요구하는 별지 제2호, 4호, 5호, 7호, 11호, 1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 및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제3조, 제4조, 제9조제1호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태선)

-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의 의견진술·처분통지 및 신고 포상금 제외 대상 등 관련 법조항을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준용하여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을 보면,
 - 1)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현재 30일 이내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여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변경
 - 2)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대상에서 포상금 합계가 전국을 기준으로 월 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서 월 평균 3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조정하였음.
 - 이는 자체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권고사항과 전문 신고자들로 인해 주민들 간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 등 부정적인 측면을 방지하기 위함.
 - 3)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운용 규정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준용한 것을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의 일원화를 위해 상위 규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함.

4)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서식 6종(제2호, 4호, 5호, 7호, 11호, 12호) 중 주민등록번호의 개인정보를 생년월일로 개정함.

- 본 개정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과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89 호
----------	--------

제출연월일 : 2015. 10.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 정확한 1회용품 사용억제 안내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여 깨끗한 1회용품 사용억제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기한 변경 (안 제5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이의제기 기한은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의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규정을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변경하여 상위법과 일치

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칙에서 상위법으로 준용토록 개정 (안 제18조)

-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

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개인정보 포함 별지 서식 개정

-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요구하는 별지 제2호, 4호, 5호, 7호, 11호, 1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라.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 및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제3조, 제4조, 제9조제1호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평가실시(대상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 있음)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있어 포상금 지급 금액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과잉신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조항 제15조제1항제3호 개정(의견반영)

- “월평균 50만원” → “월평균 30만원”으로 권고사항 반영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원안 동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 9. 03. ~ 2015. 9. 23, 20일간)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전단 중 “**제42조제1항**”을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제42조제1항**”을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한다.

제6조 중 “**제6호서식에 의하여**”를 “**제6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제2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제3호**”로, “**제2조 제9호**”를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한다)는**”을 “**한다)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동 서식하단**”을 “**별지 제9호서식 하단**”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3호 중 “**5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운용규정**)”을 “(**준용규정**)”으로 하고, 제18조 중 “**부과, 징수에**”를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에**”로 하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①성 명	(한자)	②생년월일	
	③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부 과 기 준		⑥납부통지서 번호	
	⑤고지받은일자		⑦과태료 금액	
	⑧과 태 료 처분사유			
⑨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신 청 인: (인)</p> <p style="margin-top: 20px;">영등포구청장 귀하</p>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발 신 영등포구청장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①성 명	(한자)	②생년월일	
	③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고 지 일 자		⑥과태료 금 액	
	⑤부 과 기 간		⑦이의제기 일 자	

-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11호서식>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 까지		납부장소			
	원				~					
위반행위	일시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					
위반행위자 서명				생년월일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 까지		납부장소			
	원				~					
위반행위	일시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					
위반행위자 서명				생년월일				단속공무원 확인		
<p>※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p>										
영등포구청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원	납부기한	. . . 까지 ~
세입자계좌번호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영등포구청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정)

(개인 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원	납부기한	. . . 까지 ~
세입자계좌번호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 급 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무)

(처분기관 통보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영등포구청장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한	.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생년월일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한	.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생년월일		단속공무원 확인		
<p>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p> <p>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p>							
영등포구청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영등포구청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정)

(개인 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 급 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무)

(처분기관 통보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영등포구청장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료 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에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

----60일 이내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

-----제6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

1. -----제36조제1항제

따른 식품접객업소 및 같은 법 제2
조 제9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
으로 제공하는 행위

2. 3. (생략)

제10조(신고자) ① 위반사업장을 신
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
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
반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1조(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위반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
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
는 구청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
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제13조(구청장의 신고서 처리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
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 ⑧ (생략)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3호 -----제2

조제12호 -----

2. 3. (현행과 같음)

제10조(신고자) ① -----

한다)은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신고방법) ① -----

-----따른 -----

②,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구청장의 신고서 처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지 제9호서식 하단 -----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생략)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전국을 기준으로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 8. (생략)

② (생략)

제18조(운용규정)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3. -----
-----30만원-----

4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준용규정) -----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①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부 과 기 준		⑥납부통지서 번호
	⑤고지받은일자		⑦과태료 금액
	⑧과 태 료 처분사유		
⑨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p>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 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인)</p> <p>영등포구청장 귀하</p>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①성 명	(한자)	②생년월일
	③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부 과 기 준		⑥납부통지서 번호
	⑤고지받은일자		⑦과태료 금액
	⑧과 태 료 처분사유		
⑨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p>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 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인)</p> <p>영등포구청장 귀하</p>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발 신 영등포구청장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①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고 지 일 자	⑥과태료 금 액	
	⑤부 과 기 간	⑦이의제기 일 자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발 신 영등포구청장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①성 명 (한자)	②생년월일	
	③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고 지 일 자	⑥과태료 금 액	
	⑤부 과 기 간	⑦이의제기 일 자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11호서식>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 소	
	원		~		
위반행위	일시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 소	
	원		~		
위반행위	일시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위반행위자	서명	생년월일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 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 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원		~		
위반행위	일시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 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청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 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 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원		~		
위반행위	일시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위반행위자 서명		생년월일		단속공무원 확인	

※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청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발행 번호	제 호	회계 년도			세입과목	
납부 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 금액	원		납부 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세입자 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영등포구청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발행 번호	제 호	회계 년도			세입과목	
납부 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 금액	원		납부 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세입자 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영등포구청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정)

(개인 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발행 번호	제 호	회계 년도		세입 과목	
납부 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 금액	원	납부 기한	. . 까지	납부 장소	
	원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 급 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정)

(개인 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발행 번호	제 호	회계 년도		세입 과목	
납부 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 금액	원	납부 기한	. . 까지	납부 장소	
	원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 급 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무)

(처분기관 통보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발행 번호	제 호		회계 년도	세입과목	
납부 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 금액	원		납부 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영등포구청장장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무)

(처분기관 통보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발행 번호	제 호		회계 년도	세입과목	
납부 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 금액	원		납부 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영등포구청장장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 목		
위반행위 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 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 소		
위반행위	일시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의견제출 기한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 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 목		
위반행위 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 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 소		
위반행위	일시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의견제출 기한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생년월일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계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의견제출기한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 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 기한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영등포구청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계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의견제출기한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생년월일	단속공무원
				확인

-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 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 기한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영등포구청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납부장	소	
세입자 계좌번호			까지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영등포구청
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납부장	소	
세입자 계좌번호			까지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영등포구청
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정)

(개인 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 급 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정)

(개인 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 급 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무)

(처분기관 통보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영등포구청장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무)

(처분기관 통보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영등포구청장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